

제 호

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통지서

매도인	성명(법인명)		생년월일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			
	주소(법인소재지)		(휴대)전화번호			
매수인	성명(법인명)		생년월일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			
	주소(법인소재지)		(휴대)전화번호			
허가사항	불허가사유					
	대상권리		예정금액(원)			
	번호	소재지	지목		면적(㎡)	이용목적
			법정	현실		
정착물	종류		내용		예정금액(원)	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허가하지
아니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※ 유의사항

위의 불허가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불허가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
내에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불허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
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